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응 검찰청에 송부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 추가 자료 송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영사통보에 관한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하여 심문절차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청문절차에서 판사 또는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하고자 함
-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재판부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살펴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 또는 판사는 체포동의요구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 자료 송부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제3항 신설)
- 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영사통보에 관한 권리 등을 고지 받았는지 확인하고,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면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경우에도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함(안 제57조)

-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청문절차에서 영사통보에 관한 권리 등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3.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개정 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개정예규안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요구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 자료를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 ① 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확인한다.

1. 피의자는 본인의 체포 또는 구인 사실을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피의자는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국 영사기관

원과의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

-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즉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 ③ 판사는 심문 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피의자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기본방향) ①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①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청문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제47조의2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

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한 때에는 공판조서
등에 이를 기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57조(기본방향)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
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신 설>

경우 판사는 즉시 피의자에게 이
를 고지한다.

③ 판사는 심문 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
는 경우 피의자에게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피의자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에 따라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제57조(기본방향) ① 불구속 피고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
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제62조의2(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영
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①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청문절차를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

는 경우 피고인에게 제47조의2 제1항 각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본국과 체결된 별도의 조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한 때에는 공판조서등에 이를 기재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8